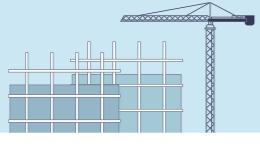


건설업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

(120억원 미만 건설현장)



* 동 실시규정(예시)은 사업장(현장)사정에 맞춰 수정 사용이 가능합니다. 특히, 동 규정은 원청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맞추어 작성되어 있으므로, 하청에서 원청과 별도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적절히 변형하여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.

실시 주기	참여자	세부 내용
월(月) 1회 매월 <input checked="" type="radio"/> 째주 △요일	» 현장소장 » 평가담당자 » 공사담당자 » 협력업체소장 » 현장 근로자	위험성평가 실시(위험파악·대책마련 절차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(노·사합동 순회점검) 노·사 합동 순회점검을 통해 현장의 유해·위험요인을 확인한다. 이때, 월간 작업일정과 관련된 신규/변동 유해·위험요인에 유의한다. » 순회점검 이전에 아차사고 사례 및 근로자 제안을 취합하여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즉시 대응하고, 순회점검 시 중점 점검한다. ② (아차사고 검토) 월간 작업 일정과 관련된 아차사고 사례를 검토하여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예방한다. ③ (근로자 제안) 근로자들의 유해·위험요인 및 위험상황 제안제도를 활용하여 지난 한 달 제보받은 사항들을 점검하고,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예방한다. ④ (예정공정표 활용) 정해진 위험성평가 주기 내에 예정된 작업공정 확인 ▶ 파악한 유해·위험요인별로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고, 「산업안전보건법」 등에서 정한 것 이상으로 위험성 감소대책 및 이행계획을 마련한다.
주(週) 매주 <input type="checkbox"/> 요일	» 현장소장 » 평가담당자 » 공사담당자 » 협력업체소장	위험성평가 결과 논의·공유, 이행상황 점검(원·하청 합동 안전 점검회의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항후 1주간 공정·작업별 핵심 유해·위험요인과 근로자들의 주의·준수사항에 대해 공유한다. • 지난 1주간 유해·위험요인별 위험성 변동이 없는지 여부 및 위험성 감소대책 이행현황을 확인한다. • 신규/변동 유해·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위험성 결정을 실시하고 위험성 감소대책을 마련한다.
일(日) 매일 작업 전	» 현장소장 » 평가담당자 » 공사담당자 » 협력업체소장 » 현장 근로자	작업 전 안전점검회의(TBM) 활용 위험성평가 결과 공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매 작업일마다 TBM을 통해 공정·작업별 핵심 유해·위험요인에 대한 주의·준수사항을 공유/전파한다. • 위험성평가 담당자는 사전에 전체 TBM 담당자에게 예정된 작업별 주요 유해·위험요인 및 주의·준수사항 등 TBM 내용을 전파한다.

* 위 실시규정은 누리집에서 「위험성평가 실시규정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(안전보건공단 누리집 ⇒ 사업소개 ⇒ 건설안전 ⇒ 건설안전자료실)



고용노동부

